

연구에 집중 할 자유, 도전할 수 있는 제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 2026년 국가R&D 행정제도개선 설명회(26.9.22.)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01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선도적 연구 환경을 조성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연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연구성과를 향상



02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추진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및 제29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법 제28조

정부는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누구든지 연구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

법 제29조

연구제도 개선의 체계 및 일정 등
관련 절차 명시

현장중심
제도개선
추진 일정
(연례)

3월

제도개선
기본지침 수립
(과기자문회의)

4월 ~ 5월

연구현장
의견 접수
(온라인, 간담회)

6월 ~ 7월

제도개선
과제 선정
(전문가등)

8월

제도개선안
마련
(과기자문회의)

2026년 제도개선 의견수렴 추진경과

STEP 01



'26.1~2월

✓ 4대 권역 간담회

- 충청권 1.26
- 호남권 1.28
- 영남권 2.2
- 수도권 2.5

✓ 연구지원인력 간담회

- 출연연구기관 2.9
- 대학 2.10
- 과기특성화대 2.10

STEP 02



'26.3월

✓ 제도개선 기본방향 의견 수렴 및 심의

- 관계부처·전문기관
- 과기자문회의의 정책조정위
- 과기자문회의의 운영위

STEP 03



'26.4월

✓ 온라인 의견수렴창구 (‘IRIS 혁신법 개선 제안’) 운영

- 학생연구자 4.30
- 신진연구자 4.30
- 중소/중견기업 5.14
- 우수연구자 5.21

* 제도개선점검단 운영(26.6월)

STEP 04



'26.5월

✓ 온라인 의견수렴창구 (‘IRIS 혁신법 개선 제안’) 운영

- 글로벌 리더 5.21
-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자 5.28
- 전문기관 실무자 5.28
- 네이버/카카오 26.5



IRIS 혁신법 개선 제안 운영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 1 우수과제 선별·지원 강화 등 단계·최종평가 체계 혁신
- 2 유연한 연구목표 조정(무병타켓) 체계 전면 도입
- 3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 제척기준 등 보완



연구비 집행 자율성·책임성 강화

- 4 단계 구분에 따른 연구비 집행 간소화
- 5 연구시설·장비 수의계약 한도 완화
- 6 간접비 비율 고시 시기 정례화 변경절차 개선
- 7 연구수당 지급기준 개편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

- 8 부처·회계법인별 연구비 기준 표준화
- 9 연구비 실적 보고 간소화
- 10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예외 신설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 11 연구비 집행관리 강화
- 12 국제공동연구 단계별 IP 확보 지원

III

(전략1)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1. 우수과제 선별·지원 강화 등 단계·최종평가 체계 혁신

현장의
목소리



- ”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도 실질적 보상이 없어 연구 의욕이 저하됩니다.
- ”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실패의 허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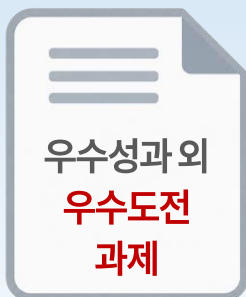
현황 및 문제점

! 결과중심 등급제·점수제 폐지로 새로운 과제평가 체계 필요

개선
방안



과제평가 결과는 완료/미완료로 구분하고,
우수과제 선별 +인센티브로 과제평가 대폭 변경



우수성과 외
**우수도전
과제**

우수과제로 선별하여
후속연구 등 연계지원



부적절 과제(불성실, 의무위반 등)
패널티 부여



III

(전략1)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2. 유연한 연구목표 변경 조정(무빙타겟) 체계 전면 도입

현장의 목소리



- ” 신약 개발, AI 분야 등 환경 변화가 빠른 **특정분야**의 경우에는 **연구주제** 및 **연구목표**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 **연구목표 변경**을 위한 협의 및 승인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연구목표 변경 절차·기준 미비로 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 한계

개선 방안



무빙타겟(Moving Target)
제도 전면 도입



.....

유연한 연구목표 변경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도입

신속 처리절차(표준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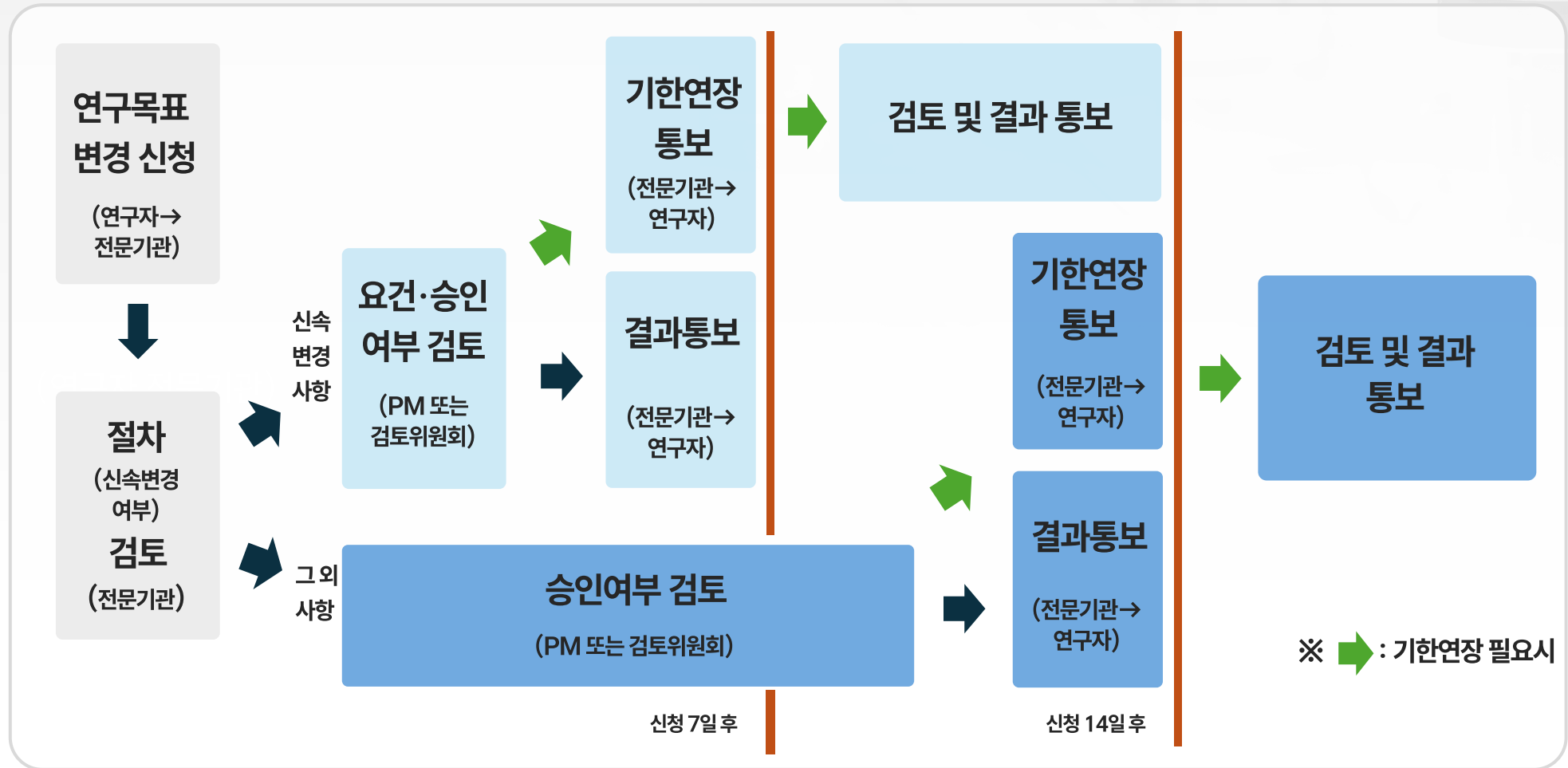


범부처 승인기준(negative 방식)



III

무빙타겟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예시)



III

(전략1)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3.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 체적기준 등 보완

현장의 목소리



- “ 대학 및 출연연과 달리, 기업의 경우 부서가 상이하더라도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으며 **중소기업**은 현실적 제약으로 **최소 부서단위 제척** 기준 반영이 **어렵습니다** .
- “ 일부 선정평가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평가위원이 빈번하게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일률적 기준 및 관리체계 미비로 평가위원 제척·회피 관리 한계

개선 방안



제척기준 보완 등을 통한 평가의 공정성 강화



모호한 제척·
회피기준
사안별 구체화



부적절 평가위원
관리 기준 마련



III

(전략2) 연구비 집행 자율성·책임성 강화 4. 단계 구분에 따른 연구비 경직성 대폭 완화

현장의 목소리



- ” 단계를 넘어가는 잔액 이월의 경우 공문-신청-입력 등 **다단계 절차**가 필요하고 처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연구비의 적시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 2단계 시작 시점부터 필요한 연구개발 장비를 절차지연 등의 사유로 **1단계 종료 시점**에 맞추어 **구매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 연구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생깁니다.

현황 및 문제점

! 단계평가 지연 또는 장비 수급지연에 따른 연구중단 우려

단계 종료 시 잔액 자동이월

필수 인건비 즉시 집행

개선방안



연구 시설·장비 도입기간 제한 완화

단계종료
2개월 전

과제종료
일정기간 전

III

(전략2) 연구비 집행 자율성·책임성 강화

5. 국가 R&D 연구시설·장비 수의계약 한도 상향기준 반영

현장의
목소리



“ 연구시설장비 단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수의계약 한도**는 몇 년째 바뀌지 않고 있어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데도 **복잡한 구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 2천만원 이하만 수의 계약이 가능하여 연구몰입 저해



개선
방안



5천 만원 이하 R&D 연구장비
수의계약 허용



재경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규정
신설 추진 중(연내)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세부지침
개정 추진



III

(전략2) 연구비 집행 자율성·책임성 강화 6. 간접비 비율 고시 시기 정례화 및 변경 절차 간소화

현장의 목소리



- 매년 초(1~3월)에 고시되는 간접비 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전년도 비율을 우선 임시 적용한 후 협약을 매번 변경하는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 하나의 과제가 아닌 다수의 과제에서 간접비 비율 변경 검토 요청 및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 간접비 비율에 대한 불규칙한 고시로 연구 관리 비효율성 초래

간접비 비율
고시 시기 정례화
(ex. ~12.31)

개선방안

간접비 비율 변경
절차 간소화



승인

통보

III

(전략2) 연구비 집행 자율성·책임성 강화 7. 연구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현장의 목소리



- “ 연구수당은 기여도 평가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하나, **연구책임자**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수당의 상당액을 본인에게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연구자가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인건비계상액)와 무관하게 연구수당을 받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참여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현황 및 문제점

! 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연구사기 저하

개선 방안



현행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

- 총액 상한(전체 인건비의 20% 이내)
- 배분 상한(1인당 연구수당 총액의 70% 미만)



III

(전략3)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

8. 부처·회계법인별 연구비 기준 통일성 제고

현장의 목소리



- “ 국가R&D 수행을 위한 범부처 규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처별 상이한 기준이 존재하여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 “ 일부 회계법인에서는 과도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회계법인별 자체 양식을 별도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여 행정부담이 심각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 부처별·회계법인별 상이한 정산규정으로 증빙 등 행정부담 가중

개선 방안



범부처 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 기준 통일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개발비 인정·불인정 사례집 마련



III

(전략3)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

9.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등 행정부담 경감

현장의 목소리



- ” 단계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모두 동일한 수준의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 부담이 됩니다.
- ” 대학 산학협력단의 경우, 수많은 과제에 대한 연구비 사용 비율 현황을 연중 수시로 요청 받고 있으며 매번 다른 양식에 입력하느라 행정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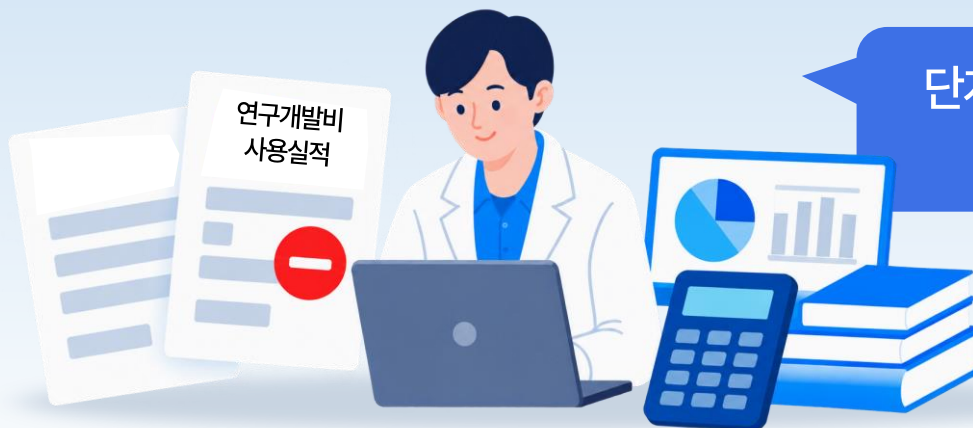
현황 및 문제점

! 단계·연차보고 모두 동일한 연구비 실적 요구로 행정낭비 초래

개선 방안



연차보고서 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항목 삭제



단계보고서, 국제공동연구 등은 보고의무 유지

III

(전략3)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 10. 연차보고서 제출의무 예외 신설

현장의 목소리



- 과제 시작일과 무관하게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연차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1차 연도 협약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협약 지연시 3개월 미만)임에도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여 연구보다 행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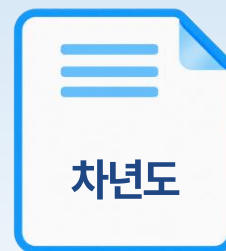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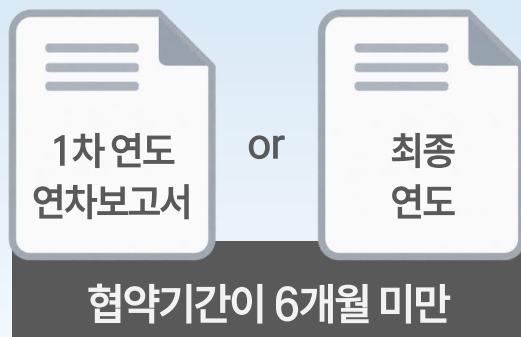
현황 및 문제점

❗ 시작·종료일과 무관하게 모든 과제의 연차보고서 제출로 행정부담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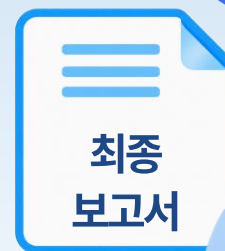
개선 방안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예외 신설



or



통합 제출!



III

(전략4)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11.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강화

현장의 목소리



- ” 국내 연구기관이 **해외기관**에 연구를 **위탁**하는 경우 연구비가 일단 송금되면 모니터링이 쉽지 않아 **관리가 어렵습니다**.
- ” **해외 연구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과제는 혁신법 상 연구비 기준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현황 및 문제점

- ! 국제공동연구 연구비 사용 관리체계 미비로 성과관리 등 부실

개선 방안



해외기관의 연구비 사용실적 관리 및 점검 강화

일반형

해외기관
사용실적
첨부

타당성
평가



공동기관형



국가별 사용기준 제시
(혁신법 준수 원칙)

III

(전략4)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12. 연구단계별 IP 확보 지원

현장의 목소리



“ 해외 선도대학은 R&D 계약전담팀이 있는 등 전문성이 높은 반면, 한국의 연구기관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연구자 개인이 직접 협상하는 경우가 많아 IP 협상에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연구기관의 전문성·협상력 부족으로 연구성과(IP) 확보 미흡

개선 방안



국제공동연구 전주기 IP 권리 확보 지원



'26년도 국가R&D 행정제도개선 — 이렇게 달라집니다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 결과중심 등급제·점수제 폐지로 새로운 과제평가 체계 필요

 - ☒ **우수과제 선별 + 인센티브로 과제평가 대폭 변경**
 - 우수성과 외 **우수도전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별하여 **후속연구** 등 연계 지원
 - 부적절 과제(불성실, 의무위반 등) 패널티 부여
- 연구목표 변경 절차·기준 미비로 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 한계

 - ☒ **무빙타겟(Moving Target) 제도 전면 도입**
 - 유연한 연구목표 변경을 위한 **신속 처리절차** 및 **범부처 승인기준**(negative 방식) 도입
- 일률적 기준 및 관리체계 미비로 평가위원 제척·회피 관리 한계

 - ☒ **제척기준 보완 등을 통한 평가의 공정성 강화**
 - 모호한 **제척·회피기준** 사안별 구체화
 - 부적절 평가위원 관리 기준 마련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

- 부처별·회계법인별 상이한 정산 규정으로 증빙 등 행정부담 가중

 - ☒ **범부처 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 기준 통일**
 -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라인 마련
 - 연구개발비 인정·불인정 사례집 마련
- 단계·연차보고 모두 동일한 연구비 실적 요구로 행정낭비 초래

 - ☒ **연차보고서 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항목 삭제**
 - 단계보고서, 국제공동연구 등은 보고의무 유지
- 시작·종료일과 무관하게 모든 과제의 연차보고서 제출로 행정부담 초래

 - ☒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예외 신설**
 - [1차 연도] or [최종 연도] 협약기간이 6개월 미만
→ [차년도] or [최종보고서]에 통합 제출

연구비 집행 자율성·책임성 강화

- 단계평가 지연 또는 장비 수급 지연에 따른 연구중단 우려

 - ☒ **단계 종료 시 잔액 자동이월**(필수 인건비 즉시 집행)
 - ☒ **연구 시설·장비 도입기간 제한 완화**
 - 단계종료 2개월 전 → 과제종료 일정기간 전
-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연구몰입 저해

 - ☒ **5천만원 이하 R&D 연구장비 수의계약 허용**
 - 재경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규정 신설 추진 중(연내)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세부지침 개정 추진
- 간접비 비율에 대한 불규칙한 고시로 연구 관리 비효율성 초래

 - ☒ **간접비 비율 고시 시기 정례화**(ex. ~12.31)
 - ☒ **간접비 비율 변경 절차 간소화**

승인

→

통보
- 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연구사기 저하

 - ☒ **[현행]+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
 - (현행) 총액 상한(전체 인건비의 20% 이내)
 - 배분 상한(1인당 연구수당 총액의 70% 미만)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 국제공동연구 연구비 사용 관리체계 미비로 성과관리 등 부실

 - ☒ **해외기관의 연구비 사용실적 관리 및 점검 강화**
 - [일반형] 해외기관 사용실적 첨부 + 타당성 평가
 - [공동기관형] 국가별 사용기준 제시(혁신법 준수 원칙)
- 연구기관의 전문성·협상력 부족으로 연구성과(IP) 확보 미흡

 - ☒ **국제공동연구 전주기 IP 권리 확보 지원**
 - 공고 시 명확하게 명시 + IP 사전교육 + 전문가 활용 및 컨설팅 지원 + 충분한 IP 협상 기간 허용 등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감사합니다

Thank you